

물품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석탄공사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심사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1항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또는 기타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필요로 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평가기준) ①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으로서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하고, 1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다.
- ②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없는 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적격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 ③ 심사대상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기술능력과 신인도에 대하여는 제1항(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당해 물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업체를 평가하여 적용한다.
- ④ 외화로 표시된 납품(판매)실적, 재무제표 등의 자료에 적용될 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⑤ 당해물품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입찰가격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4 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여부를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② 계약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구 성

(본 사) 위원장 : 자재담당 임원

위 원 : 사업처장

“ : 기획처장

“ : 총무처장

“ : 자원기술처장

“ : 자재담당 부장감사역

간 사 : 자재팀장

(현지) 본사에 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한다.

2. 의사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최저가 입찰자가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할 적격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별지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2)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2-1)

3. 업체현황 조사표 1부 (별지 3)

4.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별지 4)

5. 기업회계기준(또는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이 포함된 결산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련 신용평가자료,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별지 6) 각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1부 (별지 5)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제7조 제1항의 낙찰자 결정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심사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종 서류는 입찰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조(평가방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이행능력,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이행능력 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 [별표 2]에 의한다.

가.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당해 물품구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재무상태 평가는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 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구분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단,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비율 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또한 기술능력 및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의 재무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2], [별표 1-3]에 따르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의 재무상태평가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1-4]에 의한다.(단, 본조 제2항 제2호 관련 적격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가. 업종평균율 적용을 위한 평가대상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분류한 업종의 「중분류(종합)」 편을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가” 목 자료상의 손익 및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자산·자본의 회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다. 적격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제5조 제1항 제5호의 결산서(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포함) 평가는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되(적격심사대상자가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적용하는 결산일에 해당되지 않는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에서 적용하는 회계기간과 공유하는 회계기간이 더 많은 결산서를 적용한다),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전년도에 신설된 업체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되,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최초결산서로 본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단, 외감법 비적용 대상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초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에는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검토보고서(별지 제5호 양식)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적격심사대상자가 제3항에 의해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감법 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제5호 양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해당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제5호 양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외감법 적용대상업체의 경우는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20/100을 재무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감점 처리하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⑥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6]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배점한도 (±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단,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 7 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불비치할 때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배점한도 50점)을 제외한 여타 심사항목과 신인도(± 10 점)점수를 감안한 심사종합평점이 배점한도 50점의 100분의 80이상인 4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나, 예정가격 불비치일 경우 배점한도 50점의 100분의 80이상인 자 중에서 각각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 8 조(적격심사 면제등) ① 제3조 1항(별표1) 또는 (별표2)의 IV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어 적격심사 면제를 신청하면 이를 검토,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대한석탄공사 물품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받아 제7조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된 실적이 있는 자로서, 과거실적 물품이 심사대상 물품보다 성능, 품질 등은 동등 이상이고, 과거 실적 금액이 심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최근 3년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을 당해 입찰 추정가격의 100%이상 시행령 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 등은 심사대상자에게 제5조에 의한 심사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기타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등) ① 이 세부기준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물품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제 2 조 (개 정) ① 이 세부기준은 2002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 정) ① 이 세부기준은 2005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이 세부심사기준은 2005년 3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한 물품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제조·구매 입찰>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1항 관련)

(단위: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8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2	
	3.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매출액순이익률 라. 총자산회전율	30	
II 입찰가격		좌 동	50	평점산식 (별표1-5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10점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품질하자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정당업자 나. 담합행위자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제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30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구매 입찰>

1. 이행실적

[별표 1-1]

<배점한도 18점>

(단위: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 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18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8 16 14 12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 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0 8 6 4

■ 단, 입찰공고시 납품 이행능력의 이행실적 심사항목인 “최근 3년내 납품실적”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기간을 적용하여 공고할 경우, 해당되는 기간내 우리공사에 납품한 실적에 한해 동일 계산방식으로 계산한다.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 ② 심사항목 “가”, “나” 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인 18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목적물품과 동등이상 물품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 또는 여성 벤처기업으로서** 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발명특허(통상실시권자 제외),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거나 벤처기업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 Good Design)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점(18점)으로 평가한다(단, 해당 인증 또는 마크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4)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4)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이행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별표 1-2]

<배점한도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C. 1인 이상의 기능사 보유 D. 미보유	1.0 0.75 0.5 0.25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연수 평가	1.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1.0 0.75 0.5 0.25

※ [주]

① “가” 심사항목의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는 당해 입찰대상 품목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 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 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재무상태

[별표 1-3]<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미만 공통 제조.구매/매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부채비율	10	A. 40% 미만 B. 40% 이상 - 80% 미만 C. 80% 이상 - 120% 미만 D. 120% 이상	10 8 6 4
나.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유동비율	8	A. 120% 이상 B. 80% 이상 - 120% 미만 C. 4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40%미만·	8 7 6 5
다.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10	A. 120% 이상 B. 80% 이상 - 120% 미만 C. 4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40%미만·	10 8 6 4
라. 총자산 회전을 [총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총자산회전을	6	A. 125% 이상 B. 100% 이상 - 125% 미만 C. 75% 이상 - 100% 미만 D. 75% 미만	6 5 4 3

※ [주]

- ①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②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③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액을 적용한다.
- ④ 심사항목 중 관련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단, 정기결산서를 제출한 신설업체의 총자산회전을 계산은 당기총매출액/당기총자산으로 처리)
예) 분모 0, 분자 0이면 최저점 / 부채비율에서 분자만 0이면 최고점 / 유동비율에서 분모만 0이면 최고점

[별표 1-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상태 평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미만 공통 제조.구매/매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
AAA		AAA	30.0
AA+, AA0, AA-	A1	AA+, AA0, AA-	29.0
A+	A2+	A+	28.6
A0	A20	A0	28.3
A-	A2-	A-	28.0
BBB+	A3+	BBB+	27.5
BBB0	A30	BBB0	27.3
BBB-	A3-	BBB-	27.0
BB+, BB0	B+	BB+, BB0	26.0
BB-	B0	BB-	25.7
B+, B0, B-	B-	B+, B0, B-	2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4.0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이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지정평가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확인서 첨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II. 입찰가격

[별표 1-5]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미만 공동 제조.구매/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평점(점)} = 5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Ⅲ. 신인도 : ±10점[별표 1-6]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미만 공동 제조.구매/매점한도 ±10점>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3	A.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3
			B. KS, K마크, ISO국제품질인증받은 자,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이나 단체 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2
나.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 보유자	3
			B. 특허, GD인증 보유자	2
			C.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보유자	1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1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1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환경설비품질인증(EEC) 보유자	1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1	A. 정부로부터 사후봉사(A/S)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0.5
마. 기 타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지원 등 (조달청기준 참조)	2	A.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촉진 우수기업	2
			B.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
			C.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으로 지정 받은 자	1
			D. 산업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 산기업'	0.5
			E.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업체	0.5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1	A. 최근 1년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나. 품질하자	검사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	-2	A.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중에 있는자	-5	A. 1년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5 -4 -3 -2
나. 담합행위자	최근1년내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 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2

※ [주]

- ①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라, 마”항의 각항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에서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심사대상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마” 의 적용대상은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입찰에 한하며,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 ④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가”, “나”항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만을 적용한다.
- ⑤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로 합계한 평점은 당해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합계금액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다만,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마”항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별 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10억원 미만인 제조,구매입찰>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1항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20	
	2.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매출액 순이익율 라. 총자산회전율	30	
II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별표2-1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 타	±10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품질하자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정당업자 나. 담합행위자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 행능력 결격여부	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	-30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10억원 미만인 제조·구매 입찰>

1. 이행실적

[별표 2-1]

<배점한도 20점>

(단위: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 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20 18 16 14
나.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 (부가 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12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12 10 8 6

■ 단, 입찰공고시 납품 이행능력의 이행실적 심사항목인 “최근 3년내 납품실적”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기간을 적용하여 공고할 경우, 해당되는 기간내 우리공사에 납품한 실적에 한해 동일 계산방식으로 계산한다.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심사항목 “가”, “나” 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목적물품과 동등이상 물품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 또는 여성 벤처기업으로서** 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발명특허(통상실시권자 제외), EM, GQ,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거나 벤처기업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 Good Design)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점(20점)으로 평가한다(단, 해당 인증 또는 마크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4)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4)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이행량으로 평가한다.

< 별지 1 >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입찰 일시 :
- 적격심사 신청구분 : ①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제3조에 의한 종합심사 ()
②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제8조 제1항에 의한 심사면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대한석탄공사 사장 귀하

접수증

1. 입찰 공고 번호 :

2. 입찰 대상 물품명 :

3. 제출자 :

위건 물품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대한석탄공사 자재팀장

(인)

< 별지 2> (모든입찰 공통)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수량	
입찰금액	
추정가격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구매 입찰
(단위: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18		
기술능력	2		
재무상태	30		
입찰가격	50		
신인도	±10		
결격사유	-30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써 10억미만인
제조·구매 입찰 (단위: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20		
재무상태	30		
입찰가격	50		
신인도	±10		
결격사유	-30		

5. 신인도

등 급	해당여부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에 있는 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6 결격사유

평가항목	해당여부
부도, 파산 또는 파산신청중에 있는 자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자	

< 별지 2-1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점

평가대상업종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1. 납품실적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재무상태 : ()점

가.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당해업체 부채비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 당해업체 부채비율

부채총계(a)	자본총계(b)	계산 : (a/b)x100

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해업체 유동비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 당해업체 유동비율

유동자산(a)	유동부채(b)	계산 : (a/b)x100

다.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매출액)

당해업체 순이익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 \times 100$	등급	평점

*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 순이익(a)	총매출액(b)	계산 : $(a/b) \times 100$

라. 총자산회전율[총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당해업체총자산회전율 (a)	업종평균율(b)	계산 : $(a/b) \times 100$	등급	평점

* 당해업체 총자산회전율

총매출액(a)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b)	계산 : a/b

마. 외감법 적용대상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 따른 감점
(가, 나, 다, 라 합계점수에서 감점)

감사의견			등급	평점
A. 한정 의견 (5/100)	B. 부적정 의견 (10/100)	C. 의견거절 (20/100)	(A, B 또는 C)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0 - 1x \mid (88/100 - a/b) \times 100 \mid$	평점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다.

III.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 별지 3 >

업 체 현 황 조 사 표

1) 개 요

업체 상호 (영문)	()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FAX:)	사업자 등록번호	()
	공장	(전화:) (FAX:)	개업년월일	
종업원수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국 적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 (년 회)
업태	1 법인 (), 개인 ()		법인설립일	
	2 공급자 (), 제조자 (자가, 임차)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3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제품 공급 확약 업체 (공급자경우)	회사명	대표자	업종	주요 생산 품 목

2) 주요생산(공급) 품목(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주요 생산 품 목

3)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 년도 :
- 년도 :
- 년도 :

4) 신 인 도

품질관리	A. ISO(), EM(), GQ() B. K.S(), KT(), NT(), IT() C. 기타 : ()	환경관리	A. GR마크 : () B. ISO 환경인증 : () C. 기타 : ()
	기술보유		A. 특허권 : () B. 실용신안등록 : () C. 의장등록 : ()

< 별지 4 >

□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대한석탄공사	
	사 업 의 종 류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공급자 실적 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계 약 및 납품내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위	수량	납품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②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난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④ 우리공사와 계약한 납품실적증명은 본 증명서 대신 별지서식 4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함.

< 별지 5 >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1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별지 2-1
	3	업체현황조사서	“	별지 3
이행실적	4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	납품기관	별지 4호
기술능력	5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재무상태	6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이 포함된 결산서 등)	공인회계사(세무사)	
검토보고서	7	신용평가자료	평가기관, 신용보증기관	
	8	결산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	
신인도	9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10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11	환경관리	환경부 등	
	12	사후관리(A/S)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13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14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우리공사, 각 기관	
	15	지체상금 부과 처분 업체	우리공사	
	16	노사협력관계	노동부 등	물품계약관련서
	17	적격심사실적	신청자 또는 우리공사	류

- ※ 【주】 ① 연번 9, 10, 11, 12, 13의 증명 또는 등록증등은 원본을 제시할 경우 사본 제출
이 가능하며, 동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
② 적격심사 면제 신청서는 연번 1, 3, 4의 자료를 제출함.

< 별지 6 >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대한석탄공사 입찰참가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업 종	제 조		공 급		기 타		
○ 재무상태 검토내용							
구 분	재무비율(% 또는 회)		산출근거(단위 : 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총자산회전율			총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 산)÷2		

○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나. 결산서의 종류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1년 미만) 설립에 따른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에 의해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 외감법비적용업체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외감법비적용업체의 경우에는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검토)하고 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